

(우)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/전송(02)790-658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팀원 조시형[6575]/E-mail 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2825호

시행일자 2023. 1. 3.

수 신 각 시도 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의사회장,
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80(2023. 12. 28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사항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 변경사항

구분	기존	변경
급여대상	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*	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의 <u>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*</u> (이하 사례 해당자)
	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제14판)」내 ‘코로나	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구분	기존	변경
	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'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)	대응 지침(제14-1판)」내 「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」으로 환자, 추정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
적용기간	'23. 8. 31. 진료부분부터 적용	'24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

*붙임: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공문 1부.

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